

## 제6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서면회의)

1. 회의일시 : 2019. 12. 27.(금)

2.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3. 참석위원 : 한상혁 위원장  
김석진 부위원장  
표철수 상임위원  
허 욱 상임위원  
김창룡 상임위원 (5인)

4. 불참위원 : 없음

### 5. 회의내용

#### ① 서면회의 사유

-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서면결의) 및 제14조의2(서면보고)에 의거, 의결사항 '가', '나', '다', '라'와 보고사항 '가'는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됨

#### ② 의결사항

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2019-66(서)-323)

- 행정규제기본법」의 개정·시행\*으로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규제 재검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고시에 반영한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

\*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행정규제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적용 범위)제2항2의2호가 개정('17.11.28.)·시행('18.3.1.)됨에 따라 일몰 해제(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19.8월) 다만,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은 계속 적용되어 이를 반영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4항과 제69조의2제4항 및 [별표8]에 따른 고시

나.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2019-66(서)-324)

- '16.3.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용어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개인정보의 유출원인 분석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접속기록 보관기간을 확대하는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고시

다. 방송광고 법규위반 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 (2019-66(서)-325~328)

- 「방송법」 제73조제2항 및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제59조의2·제59조의3을 위반하여 방송광고를 한 (주)에스비에스 등 4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안)을 다음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함

< 과태료 부과(안) >

피심의인	위반 법규	과태료 금액
(주)에스비에스	「방송법」 제73조제2항,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의2제4항제2호	1,800만원
제이씨엔 울산중앙방송(주)	「방송법」 제73조제2항,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가목	1,500만원
금강방송(주)	「방송법」 제73조제2항,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가목	1,500만원
(주)매일방송	「방송법」 제73조제2항,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의3제3항제2호	1,500만원

라. 협찬고지 법규위반 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 (2019-66(서)-329)

- 「방송법」 제74조제2항 및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협찬고지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을 위반한 (주)와이티엔에 대해 과태료 부과(안)을 다음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함

< 과태료 부과(안) >

피심의인	위반 법규	과태료 금액
(주)와이티엔	「방송법」 제74조제2항,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제1호	700만원

### ③ 보고사항

#### 가.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사항

- 법제처의 “피후견인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결격조항 정비방안”(19.7.9.국무회의 보고)에 따라 해당사항을 정비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고를 원안대로 접수함

※ 피후견인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본인·배우자 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하며(민법」 제12조),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을 통칭하는 단어

- 피성년후견인(舊 금치산자) :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 결여  
피한정후견인(舊 한정치산자) :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